

일본의 국회

일본국 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공포되어 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새 헌법 하에서 첫 국회가 같은 해 5월 20일에 소집되었습니다.

국회의 지위

국회는 국권의 최고 기관이자 유일한 입법 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41조).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직접 대표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회는 국가의 유일한 입법 기관이므로 국회만이 법률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조직

일본의 국회는 참의원(參議院)과 중의원(衆議院)의 양원(兩院)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의원(議院)은 각각 독립해서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두 의원의 의결이 완전히 일치되었을 때 국회의 의사가 성립됩니다.

중의원의 의원 정수는 465명으로 그 중 176명은 비례대표제로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선출되며, 그 밖의 289명은 소선거구제로 선출됩니다. 참의원의 의원 정수는 248명이며 그 중 100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그 밖의 148명은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돗토리현(鳥取県)·시마네현(島根県), 토쿠시마현(徳島県)·코치현(高知県)은 2개 현이 1개 선거구〉을 단위로 하는 45개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지만 3년마다 의석의 반수가 다시 선거를 하게 됩니다.

국회의 권한

국회는 입법권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1) 국가 예산의 심의 의결
- (2) 외국과 체결하는 조약의 심의 승인
- (3)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 (4) 헌법 개정 제안

참의원과 중의원은 각기 별도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민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을 심의합니다. 각 의원(議院)은 각각 의장, 부의장 및 상임 위원장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매번 회기 초에 필요에 따라 특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절차 및 중참 양원의 의원(議院) 내부의 규율에 관한 규제를 제정하는 일, 원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의원에 대하여 징계를 가하는 일 등이 가능합니다.

국회의 각종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의원은 이하의 각종 중요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즉 법률안 및 결의안을 제출하는 일,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정치 문제에 관하여 내각에 질문하고 회답을 요구하는 일, 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토론 및 표결에 참여하는 일 등입니다.

국회의 소집 및 회기

국회의 소집은 내각이 결정하고 ‘소집 증서’가 공포됨으로써 소집됩니다. 국회에는 통상국회, 임시국회, 특별국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통상국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되며 회기는 150일간입니다. 통상국회는 다음 회계 연도의 국가 총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임시국회는 통상국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 자연재해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가 국가에 발생했을 때 재해대책의 추가경정예산이나 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해 내각이 소집을 결정합니다. 중의원 또는 참의원의 4분의 1이상의 의원이 소집을 요구했을 때도 내각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또한 중의원 의원의 4년의 임기가 만료됐을 때 실시되는 총선거나 참의원 의원의 통상 선거 후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특별국회는 중의원이 해산됐을 때 치러지는 총선거 후에 소집됩니다. 특별국회의 소집과 동시에 현 내각은 총사퇴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두 의원(議院)은 새로운 내각총리대신을 지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그 때마다 국회가 소집됐을 때 결정됩니다. 또한 통상국회의 회기는 한번, 임시국회와 특별국회의 회기는 두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회식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중참 양원 의원들은 참의원 본회의장에 모여 개회식을 개최하며, 그 때 천황께서 참석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회식에서는 우선 중의원 의장이 양원을 대표하여 식사(武辭)를 하고 이어서 천황폐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정방침 연설

개회식을 개최한 다음 양원은 각각 본회의를 열어 국무대신(國務大臣)의 연설을 듣습니다. 통상국회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이어서 외무대신, 재무대신 및 경제재정정책 담당대신도 연설합니다. 임시국회 또는 특별국회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이 연설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국무대신도 연설을 합니다. 이들 연설에 초점을 맞추어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이 질의를 하고 내각총리대신을 비롯한 관계 각 대신이 답변을 합니다.

본회의 (전체회의)

본회의는 그 의원(議院)의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이며 각 의원(議院)의 의사는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본회의는 공개되고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전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안이 통과됩니다. 참의원 본회의의 표결 방법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장이 이의(異意)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방법(의원은 구두로 ‘이의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찬성자의 기립을 구하는 방법, 셋째는 기명투표(의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백패를 지참하고 반대하는 의원은 청패를 지참하여 차례로 투표합니다), 넷째는 버튼을 눌러 투표하는 버튼식 투표입니다(의원은 자신의 의석에 설치된 투표기의 버튼을 눌러서 투표합니다). 참의원은 보통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중의원은 보통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시에 본회의를 개최합니다.